

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21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한편, 상위 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학과성적에 의한 석차제가 교육부예규의 개정으로 교과목별 성적으로 바뀜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교과목 성적 상위자로 개정함(안 제2조)
- 나. 장학생 선발 시 부산시교육청교육감의 의견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소속 학교장의 의견참작으로 간소화함(안 제4조)
- 다. 통장의 중도 해촉에 대비하여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지급하던것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라.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)
- 마.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장학기금의 세입금 중 세입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과목을 삭제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(1) 교육부예규242호('96. 1. 20 개정)
 - (2)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2조, 제4조, 제5조('99. 1. 18 개정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% 이상인 자. 다만 신입생 중 중학생은 교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전원 선발하며 고등학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을 반영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”을 “소속 학교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 중

“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”를 “학비 납기일 전에”로 하며, “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”를 다만, 신입생은 3월중에 보호자에게 지급한다.”로 한다

제8조 제1항 중 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 제2항 중 “보조금,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(생략)</p> <p>1. <u>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4조(선발)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<u>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)①장학금은 <u>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조(지급정지)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</u></p> <p>3. <u>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</u></p> <p>6. <u>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다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설치) ①(생략)</p> <p>② <u>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, 보조금,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% 이상인 자. 다만, 신입생 중 중학생은 교과목 성적에 관계 없이 전원 선발하며 고등학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을 반영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선발)①-----</p> <p>-----<u>소속 학교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)①-----<u>학비 납기일 전에</u>-----</p> <p>-----<u>. 다만, 신입생은 3월중에 보호자에게 지급한다.</u></p> <p>제8조(지급정지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u>,보조금</u>-----</p> <p>-----</p>